

『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6월 1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6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6월 30일

제13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허 경 선

나. 제안이유

-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장기요양 보험료 고지 및 징수가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됨에 따라 저소득 계층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지원하여 저소득계층의 노후 생활 보장 및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제명 및 해당조문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제명변경
 - 「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」→「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」
- 관련 조문 변경
 - 국민건강보험료→「국민건강보험법」및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의하여 부과되는 보험료 (안 제1조)
 - 보험료→ 국민건강보험료 (안 제2조 및 제3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
- 저소득계층 보험료지원 조례개정 협조 공문
(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지원팀-957 <2008.4.18>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
 -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저소득계층에 장기요양보험료를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지원해 주기 위하여 제명 및 조문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저소득 계층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험료 지원 범위를 「국민건강보험료」에서 「국민건강보험료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료」를 추가지원하고
- 이와 관련하여 제명을 변경하면서 「보험료」를 「국민건강보험료」로 조문 일부를 변경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관련법령 개정으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고지됨에 따라 저소득계층에 장기요양보험료(국민건강보험료의 4.05%)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